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제1호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023. 01. 01. 시행)에 따라 기금 관련 공무원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조성 재원 확대 (안 제2조제1호)
- 나.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4조제3항제1호)
- 다. 기금관련 공무원 직명 현행화 (안 제4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를 “국가, 경상북도”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새마을담당”을 “새마을진흥팀장”으로 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새마을담당”을 “새마을진흥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등)”을 “(관계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재원)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국가</u> 또는 구미시 출연금 2. 3. (생략)	제2조(기금의 재원) ----- -----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u> 2. ~ 4. (생략)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u>새마을담당</u> 이 된다. ⑤ (생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새마을담당</u> ② (생략) 제12조(<u>관계규정의 준용등</u>)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 <u>새마을진흥팀장</u>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u>관계규정의 준용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관계법령

□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 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는 50%, 시군은 50%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5조(대외직명)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의 호칭은 팀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새마을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현 주
	팀 장	김 혜 선
	담 당 자	정 민 정 (480-6802)